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179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나2168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17985 판결

전 문

원 고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김재성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45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5. 2.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에게 대출금 2억 원, 이자율 연 4.43%, 연체이자율 연 12%, 원금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D의 대표이사 A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과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A과 E는 2018.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45430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간회합504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A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2018회단1018호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D에 관한 간이회생절차는 2019. 1. 30. 폐지결정되었고, A에 관한 회생절차도 회생절차폐지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2019. 2. 19. 폐지결정되었다. A은 2019. 3. 5.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20209호, 2019하면202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9. 6. 27.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후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 5. 1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7985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8. 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기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20. 10. 27.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성립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체결 이전 A이 D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소비대차채무에 대하여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체결 무렵 A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으로부터 1개월 후 간이회생을 신청한 사실, 그 후 A도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머지않아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인바, 이는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인권의 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2018. 4. 13.자 매매예약이 부인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 10㎡ 중 의 공유지분
2분의 1 끝.

